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정의 추가 신설(안 제1조의2)
- 2)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사업 신설 (안 제6조의2)
- 3) 지원금의 환수 신설(안 제6조의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회복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 됨

2) 주요 내용

가) 정의 추가 신설(안 제1조의2)

- “전세사기피해자등”, “전세피해확인서” 를 추가 신설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

나)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사업 신설 (안 제6조의2)

-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, 주거안정 지원,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현행 조례에서는 상담 및 정보제공, 교육 등의 행정적 지원으로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

다) 지원금의 환수 신설(안 제6조의3)

3) 검토 의견

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정·시행(2023.6.1.)에 따라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
-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재정 지원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등의 보호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